

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내용

-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채용 (공통운영요령 제26조)
 - 산업기술 R&D 수행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고용하도록 지원조건 변경
- 추가채용시 현금부담 완화(공통운영요령 제25·27조)
 - 중견·중소기업이 당초 계획(협약)보다 추가채용시 민간 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인건비만큼 감면하고, 현물로 대체
- 투자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근거(공통운영요령 제37조)
 - 투자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R&D 사업화 관련 상세 성과정보를 공개 범위에 추가
- Buy R&D 활성화를 위한 현금부담 경감(공통운영요령 제25조)
 - 중소·중견 기업이 효율적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기술 도입시 심의 절차를 거쳐 자체 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경감
-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(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, 별표2)
 - 기술·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계속수행 필요가 없어진 과제는 사업비 반납이나 제재 없이 중단 허용
- 경쟁형 과제 활성화(공통운영요령 제20조, 제44조)
 - 경쟁형 R&D 참여 과제는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페널티 면제하고, 과제수행 총량제* 적용 배제
- R&D 결과 검증강화(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)

- 최종평가시 공신력있는 기관(시험인증기관 등)의 시험성적서 첨부
- 공인 시험성적서 첨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이 평가방법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통해 얻은 결과 제출

○ 규제개선 체계 구축(공통운영요령 제18조)

- R&D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사항의 검토를 병행토록 하고, 사업심의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 여부 확인

○ 시약·재료비 등 물품구매기준 마련(공통운영요령 제31조의2, 국조실 지침사항)

- 기준금액(2천만원*) 이상 물품구매는 과제 연관성, 규모 적정성 등 사전 검토 실시하고, 누계 500만원 이상 구매물품은 정산 강화

○ 연구발표회 운영방안 개선(공통운영요령 제29조)

- 진행 6개월 이내 과제는 연구발표회 대신 서면검토,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대체

○ 기타 연차협약에서 일괄협약으로의 변경에 따라 규정상 필요한 문구 조정 등